

일하는 즐거움, 쌓이는 행복

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!

5월에 신청하세요!

신청대상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
※ 신청요건은 뒷면을 확인하세요.

신청기간 2019. 5. 1. ~ 5. 31.
※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말 지급 예정입니다.

신청방법 ARS(1544-9944), 홈택스(인터넷, 모바일), 서면신청
※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


신청자격
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» 근로장려금

부부합산 총소득요건	가구원 구성	연간 총소득기준금액	지급액
	단독가구 ¹⁾	2,000만원 미만	3~150만원
	홀벌이가구	3,000만원 미만	3~260만원
	맞벌이가구 ²⁾	3,600만원 미만	3~300만원
1) (단독가구)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) (맞벌이가구)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			
재산요건	'18. 6. 1.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일 것		

» 자녀장려금

가구요건	'18.12. 31. 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		
부부합산 총소득요건	가구원 구성	연간 총소득기준금액	지급액(자녀 1인당)
	홀벌이가구	4,000만원 미만	50~70만원
	맞벌이가구		
재산요건	'18. 6. 1.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일 것		

» 공통사항

- **18세 미만** 부양자녀 : 2000. 1. 2. 이후 출생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
- **70세 이상** 부양부모 : 1948. 12. 31. 이전 출생 부 또는 모
-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
- *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「모의계산」(화면우측 상단)에서 가능

유의사항

- ①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**고의나 중대한 과실**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**환수**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**지급제한**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- ②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③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④ 가구원 **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50%** 지급됩니다.
- ⑤ **기한후 신청**(6. 1.~12. 2.)의 경우 **10% 차감**하여 지급됩니다.
- ⑥ **국세체납액**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**30%한도 내에서 총당** 후 지급합니다.